

고용유지 지원제도 사례별 활용방안

〈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〉

□ 고용유지 지원제도 사례별 활용방안

- 1)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(연240일) 남은 경우
 -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소진 시까지 활용 후
⇒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, 무급휴직 신속지원금 중 선택하여 활용
- 2)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(연240일) 소진한 경우
 -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, 무급휴직 신속지원금 중 선택하여 활용
- 3)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*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
 -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를 전부 소진한 경우
 - ② 고용유지지원금 휴업·휴직 규모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
 - ③ 근로시간 단축, 교대제 개편 등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

*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시 임금 감소분의 50% 지원하는 제도로, 지방노동관서 심사위원회 승인시, 근로자 1인당 최대 월50만원×6개월 지원

□ 고용유지 지원제도 비교표

구 분	고용유지지원제도	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	무급휴직 신속지원금
지원수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2-3월) 75% • (4-9월) 90% • (이후) 67% <기존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균임금 50% 이내 (심사위원회에서 결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150만원 (월 50만원)
상한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일 66,000원 		-
지원기간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년 240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180일(근로자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90일(근로자별)
사전절차 요건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※ (특별업종) 1개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유급휴업 ※ (특별업종) 즉시 실시
휴업·휴직 규모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휴업) 총 근로시간의 20% 초과해 휴업 • (휴직) 1개월 이상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90일 이상 휴직 실시 ※ (특별업종) 30일 이상 일반업종도 30일 이상으로 완화 추진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일 이상 휴직 실시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 규모별 아래의 근로자 수 이상 휴직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99명 이하 : 10명 이상 ▲ 100명 ~ 999명 : 10% 이상 ▲ 1,000명 이상 : 100명 이상 	

* 무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 지원금과 지원수준 동일하나, 절차상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